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경찰관의
예방과 저지 근거 마련〉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59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9. 22.
3. 회부연월일 : 2025.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13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와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u><신 설></u>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위반 행위는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받는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음.

개정안 제6조의2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로 동행위는 같은 법 제79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함.¹⁾

그리고 개정안 제6조의2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진행중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시의안번호: DD20499) 제127조제5항의 내용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생략)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5. ~ 7. (생략)

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시키는 행위로, 이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시의안번호: DD20499) 제1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함.²⁾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및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DD20499)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 중 안전·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 국경행사, 시험 또는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학교교육, 오락·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3. 제2항·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인자유기구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킨 사람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법 체계상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저지’ 문구를 ‘제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접경지역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북한의 도발 등 위험성을 통일부·합참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유관부처 위험성 판단절차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